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6. 3. 7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2월 18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18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6. 3. 4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서종석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되어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고,
- 같은법 시행령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, 해당 규정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에 편입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」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본 폐지 조례안은 ‘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’ 과 관련된 규정이 2015.11.26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 을 개정하여 정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- 그 동안 관련 법령의 개정 경위를 살펴보면, 당초,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은 「지방재정법」 (이하 ‘법’ 이라 한다) 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나, ‘법’ 과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.

<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연혁>

근 거 조 문	재정보증을 정하는 법규형식	비 고
지방재정법 제116조	조례	2005.8.4.삭제
지방재정법 제95조	대통령령	2005.8.4.개정
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	행정자치부 장관	2005.12.30.개정
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	지방자치단체장 (규칙)	2007.4.5.개정

- 구청장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도록 한 ‘법’ 의 취지에 맞게 자치법규 형식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22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2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되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고,
- 나.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, 해당 규정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」에 편입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폐지한다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 및 제116조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38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(1) 규제심사 : 의견없음
 - (2) 부패영향평가 : 의견없음
 - 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비대상
- 라. 기 타
 - (1) 입법예고(2016. 1. 14 ~ 2. 3, 20일간)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